



: 2020-05-22

## 대 법 원

### 제 2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9도11962 정치관여  
피 고 인 A  
상 고 인 피고인  
변 호 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  
담당변호사 김형성  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노1288 판결  
판 결 선 고 2020. 3. 12.

### 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)를 판단한다.

원심은, 피고인이 B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B사령부 소속 C 부대원들과 이 사건 정치관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,

